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 . . (제 회)	

해 양 수 산 생 명 자 원 의 확 보 · 관 리
및 이 용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「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이 공포(법률 제20136호, 2024.1.23. 공포, 2024.7.24. 시행)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(안 별표1)

또한,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심사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전자문서로 발급되고 지정기간이 명시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를 삭제하여 행정서류가 간소화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)

3. 주요내용

가.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
(안 별표1제2호마목)

- 법 제19조제1항5호가 신설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행정처분(경고, 지정취소) 기준 마련

* (1차위반) 경고 → (2차위반) 경고 → (3차이상) 지정취소

나.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신청시 행정서류 간소화(안 제15조제1항)

-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에서 지정증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, 지정기간이 명시된 지정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 반납의 실효가 없어 조문정비 등 재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

* 안 제15조제1항제4호(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) 삭제

다. 다른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*,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* 안 제27조제5항제3호(「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시행령」제2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) 삭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19. ~ 3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초조사의”를 “기초조사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정하는 경우에는”을 “인정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4항 후단 중 “산입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제외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”을 “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기반시설 구축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 제2호의 표에 마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
------	--------	--------
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2호	시정명령	시정명령	지정취소
다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3호	시정명령	시정명령	지정취소
라.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지정말소를 신청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4호	지정취소		
마.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제5호	경고	경고	지정취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) ① 「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른 <u>기초조사</u> 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	제2조(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초조사</u> -----.
제4조(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 계획) ① (생 략)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<u>인터넷 홈페이지</u> 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	제4조(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 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누리집</u> ----- -----.
제6조(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·평가 등) ① (생 략)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<u>인터넷 홈페이지</u> 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	제6조(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·평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누리집</u> ----- -----.
	③ -----

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·평가 또는 등급 부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,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제12조(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) ① (생 략)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(이하 “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14조(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·절차 등) ① ~ ③ (생 략)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

----- 인정할
때에는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누리집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·절차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⑤ (생 략)

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⑦ ~ ⑩ (생 략)

제15조(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)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

② (생 략)

제16조(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

----- 제외한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누리집-----

-----.

⑦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

취소) ① (생 략)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<u>인터넷 홈페이지</u>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<u>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</u> 제27조(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·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) ① ~ ④ (생 략) ⑤ 법 제32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1. ~ 2. (생 략) 3. 「<u>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</u>」 제23조의2제5호에 <u>해당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</u>	취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누리집</u>----- -----. <u>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기반시설 구축</u> 제27조(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·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75